

주로스앤젤레스한국문화원(LA문화원) 종합감사 결과보고

가. 감사개요

■ 감사기간 : 2013. 6. 24. ~ 7. 5. (10일간)

■ 감사반 : 감사담당관 외 3명 (실지감사)

■ 감사내용

○ 2010년 ~ 2013년 현재까지 기관 및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
나. 감사결과

(단위 : 건)

합 계			신분상 조치		재정상 조치		행정상 조치					모범 사례	현지 조치
							시정	주의	개선	권고	통보		
건수	금액	인원	건수	인원	건수	금액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	건수
6	-	-	-	-	-	-	-	3	-	2	-	1	-

※ 첨부서류 : 감사처분 요구내용 1부.

감사처분 요구내용

(LA문화원)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<p>○ 행정원 상여금 지급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09년~'12년까지 행정원의 상여금을 지급기준(기본급의 연 100% 지급)을 초과하여 기본급의 153~173%까지 적용하여 지급 <p>[표] LA문화원 상여금 지급계획 및 실제 지급 현황(2009~2012년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 US \$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2f1;"> <th rowspan="2">년도</th> <th rowspan="2">직원 수</th> <th rowspan="2">상여금 재원(A)</th> <th colspan="3">실제 지급액</th> <th rowspan="2">적용율 (B/A)</th> </tr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e0f2f1;"> <th>상반기</th> <th>하반기</th> <th>합계(B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09</td> <td>9명</td> <td>27,463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</td> <td>41,826</td> <td>41,826</td> <td>153%</td> </tr> <tr> <td>2010</td> <td>9명</td> <td>28,028</td> <td>3,600</td> <td>37,994</td> <td>41,594</td> <td>148%</td> </tr> <tr> <td>2011</td> <td>9명</td> <td>29,060</td> <td>14,400</td> <td>30,951</td> <td>45,351</td> <td>156%</td> </tr> <tr> <td>2012</td> <td>9명</td> <td>29,580</td> <td>14,300</td> <td>36,801</td> <td>51,101</td> <td>173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개 문화원 상여금 지급관련 표본조사 결과, 영국·프랑스·영국문화원은 지급 기준대로 집행, 반면 동경·뉴욕·워싱턴 문화원은 지급 기준대로 집행하지 않음 	년도	직원 수	상여금 재원(A)	실제 지급액			적용율 (B/A)	상반기	하반기	합계(B)	2009	9명	27,463	-	41,826	41,826	153%	2010	9명	28,028	3,600	37,994	41,594	148%	2011	9명	29,060	14,400	30,951	45,351	156%	2012	9명	29,580	14,300	36,801	51,101	173%	<p>○ 주의요구 및 통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향후에는 상여금을 지급 기준에 맞춰 집행하도록 “기관주의” 조치 - 재외문화원별 성과상여금의 불균형 해소 등 재외 문화원 행정원의 보수 체계가 합리적으로 운영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“통보” (국제문화과)
년도	직원 수				상여금 재원(A)	실제 지급액			적용율 (B/A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상반기	하반기	합계(B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09	9명	27,463	-	41,826	41,826	15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10	9명	28,028	3,600	37,994	41,594	14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11	9명	29,060	14,400	30,951	45,351	15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12	9명	29,580	14,300	36,801	51,101	17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<p>○ 시설공사 및 시설유지·보수 대가 지급업무 부적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개 시설공사('09~'12년, \$378,505) 추진 관련, 공사가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을 모두 같은 날짜에 지출결의(수표발행)하여 「국고금 관리법」 및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위반 - 2개 공사(\$275,800) 예산은 예산 이월 승인 없이 다음 연도에 집행하여 「국가재정법」 제48조 위반 - 도서관 정보실 유지·보수 계약조건('06~'11년, 연간 \$600 지급)의 변동에도 '12년에 재계약 체결없이 유지·보수대금 \$999을 집행 	<p>○ 주의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향후 시설공사 추진시 관련 법률 규정 숙지 및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, 전산 및 시설관련 유상 유지·보수 계약을 철저히 이행토록 “기관주의” 조치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민간단체 예산 지원 관리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후 집행내역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지원 단체 대표자 명의의 예산사용 내역서 및 자금수령증을 증거서류로 제출('12년, 2건)받음으로써 집행내역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징구 소홀 -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후 집행계획을 변경하여 지원 단체대표자의 인건비를 초과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승인신청서도 받지 않고 공문서없이 내부 보고후 구두로 변경 승인함('10~'12년, 3건, \$2,000)으로써 문서로 처리해야 하는 변경 승인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권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하여 적정한 증거서류 징구, 문서를 통한 승인 절차 이행 등 집행 및 정산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“권고”
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물품 취득 및 관리 소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품 구매 시 LA문화원의 검사 및 국제문화과의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(745건) - 내용연수 초과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은 불용처분 등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나, 이를 방치함(49건) - 물품관리카드에 취득방법 기재 오류 및 물품운용관 변경 미기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권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물품관리법」 및 내부규정에 따라 물품을 적정하게 취득·관리하도록 “권고” - 재외문화원의 물품 취득·관리 등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“권고”(국제문화과)
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월별 시간외수당 지급기준(월 기본급의 3% 이내)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근거 없이 12월분 시간외수당 지급 시 합산하여 일괄 지급 - '11년에 국고로 집행해야 할 시간외 수당을 관광기금으로 지급(\$ 3,699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의요구 및 통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광기금으로 시간외수당을 집행한 것에 대하여 “기관주의” 조치 - 이월된 시간외수당의 연말 지급에 대해서 관련근거를 마련하도록 “통보”(국제문화과)

연번	지 적 내 용	조 치 사 항
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국 역사·문화 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지 민간단체인 KAFE(Korea Academy for Educators/대표자 Mary Connor)와 협력하여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전역 27개주, 161개 학교의 미국교육자 2,200여명에게 한국의 역사, 문화를 소개하는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확산에 공헌 - LA시경찰국(LAPD) 및 LA카운티세리프국(LASD) 등 미국의 지자체기관과 협력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,101명의 LA 경찰 및 LA카운티 치안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역사, 문화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보 [모범사례] - LA문화원의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하도록 “통보”(국제문화과)